

서울특별시의회
제32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4. 12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3조(적용범위)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
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
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2조의 경우,
조례상 화장실 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
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건축물 면적을 수정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